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장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운
피 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배상현
변 론 종 결 2016. 3. 10.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991. 9. 11.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10. 18.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4. 14:00경 그 소유인 00소000호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서A가 운전하는 00무0000호 폴로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서A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정여춘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1. 기각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75호(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2015. 12.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장애인 횡단보도 충격완화시설과 장애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완화시설을 통과하면서 나는 '쿵'소리와 차체의 흔들림 및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워셔액이 부딪치는 소리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주차량이나 도로교통법이 정한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제품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지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

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바,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지체 없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서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커서 차가 옆으

로 휘청거릴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인 시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클랙슨을 계속 울렸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찰이 작성한 2015. 7. 14.자 수사보고(목격차량 CCTV)에 "목격자의 차량에 장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자 피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서행할 때 이 사건 차량이 우측 뒤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고 좌회전해서 그냥 가고 피해 차량은 정지한다.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이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가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심하게 파손되었고, 이 사건 차량 뒤 범퍼도 파손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5. 6. 4. "어제 늦게까지 술을 먹어 혹시나 음주 나오지 않을까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장애인 횡단보도 충격완화시설을 통과하면서 나는 '쿵'소리와 차체의 흔들림 및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워셔액이 부딪치는 소리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위 충격완화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충격완화시설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및 흔들림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 117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사고 후 도주, 미조치 및 미신고를 사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은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

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민희진

 판사 문기선